

#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0. 5. 20.  
의회운영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0. 5. 13. 권영숙 의원 외 5명
- 나. 회부일자: 2020. 5. 13.
- 다. 상정일자: 제238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(2020. 5. 20.)  
상정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권영숙 의원

### 가. 제안이유

「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(대통령령)」이 개정되어 2019. 3. 25. 시행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마포구의회 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가.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4조)
- 나. 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관한 사항(안 제4조의2)
- 다. 직무 관련 조언·자문 등의 제한 사항을 규정(안 제4조의3)
- 라. 가족 채용 제한 사항에 관한 사항(안 제4조의4)

- 마.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사항(안 제4조의5)
- 바. 알선·청탁 등의 금지에 관한 사항(안 제8조의2)
- 사. 사적 노무 요구 금지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의2)
- 아.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의3)
- 자. 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(안 제15조)

### 3. 검토보고 (전문위원 신준호)

#### 가. 조례 개정 배경

- 본 개정조례안은 2018. 12. 24.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의회의원 행동 강령(대통령령 제29431호) 개정령이 공포되어 2019. 3. 25. 시행됨에 따라 현행 법·제도적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음.

#### 나. 주요 조문 검토

- 개정조례안은 사적 이해관계인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 강화하여 의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고, 직무 관련 조언 및 자문 등의 제한, 가족 채용 제한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조항을 신설하여 의원의 청렴의무를 강화함.(안 제4조~안 제4조의5)
- 알선·청탁 등의 금지, 사적 노무 요구 금지,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규정을 통하여 부당이득의 수수를 금지하였고, 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의 행위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를 조성하고자 해당 조문을 신설함.(안 제8조의2~안 제15조)
- 신설 조문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마련한 표준안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,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#### 다. 종합 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안건심의 등 직무와 관련하여 지방의회의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나 지방의회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직원·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·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등에 해당하면 구의회 의장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·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등을 할 수 없고, 의원의 가족을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그 산하기관에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, 의원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조항을 신설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의 개정 시행시기를 고려하였을 때 다소 시의성은 떨어지나, 지방의회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사항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 : 없음